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947
----------	-----

제안일자 : 2023. 07. 03.  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명	의안번호	발의자 (제출자)	회부일	회의정보	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725	이민석 의원	'23.6.5.	상정 · 심사	제319회 정례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('23.7.3.)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816	이민석 의원	'23.6.5.	상정 · 심사	제319회 정례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('23.7.3.)

- 제319회 정례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(2023.07.03.)는 위 2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서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정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대상에 '공공공지, 광장, 공용주차장'을 추가하여

공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재개발구역 주변 저층주거지의 주차부족 문제를 해결코자 함.

- 정비사업 유형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정비사업방식에 따라 이를 명확히 분리·운영하여 사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- 조합 해산(청산)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조합장 또는 청산인이 공공지원자에게 6개월마다 제출토록 하고, 구청장은 시장에게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여, 청산금 미지급, 지속적인 경비 지출 등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, 체계적인 조합 해산 및 청산을 유도하여 공공의 적극적인 관리·감독을 가능케 함.

## 2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대상에 광장, 공공공지, 공용주차장을 추가 함(안 제52조).
- 나. 「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고시 때까지 정비사업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한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함(조례 제689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삭제).
- 다. 조합 해산 또는 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조합장 또는 청산인이 공공지원자에게 6개월마다 제출토록 하고, 구청장은 시장에게 매 반기가 끝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토록 함(안 제86조제2항, 제62조제3항).

#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2항제2호나목 중 “녹지”를 “녹지, 공공공지, 광장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공용주차장

제6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계획과 추진사항을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장을 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8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”을 “추진위원장, 조합장 또는 청산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4호 중 “추진사항”을 “추진사항(다만,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조합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제 1항제4호 관련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인이 제출한다.

조례 제689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 2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2조(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(이하 “설치비용”이라 한다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소공원, 어린이공원 및 <u>녹지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다. (생략)</p> <p>③ ~ ⑨ (생략)</p> <p>제62조(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52조(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<u>녹지, 공공공지, 광장</u></p> <p>다. <u>공용주차장</u></p> <p>라. (현행 다목과 같음)</p> <p>③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2조(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계획</u></p>

③ (생략)

제67조(협약체 구성 및 운영) ①

· ② (생략)

③ 협약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위원장 1명(제2호에 따른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)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제2호에 따른 전문가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
1. ~ 7. (생략)

④ ~ ⑧ (생략)

제86조(자료의 제출) 추진위원장

또는 조합장은 구청장의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자(위탁지원자를 포함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

과 추진사항을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67조(협약체 구성 및 운영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위원장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86조(자료의 제출) ① 추진위원

장, 조합장 또는 청산인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 
----- 추진사항(다만,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)

<p>5.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5. (현행과 같음)  <u>② 조합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제1항제4호 관련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인이 제출한다.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현행	개정안
<p>서울특별시 조례 제6899호  <u>&lt;2018.7.19&gt;</u>  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(생략)  제2조(유효기간) <u>제3조 및 제6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비사업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,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,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사항은 「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</u></p> <p>제3조 ~ 제36조 (생략)</p>	<p>서울특별시 조례 제6899호  <u>&lt;2018.7.19&gt;</u>  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  제2조(유효기간) <u>&lt;삭제&gt;</u></p> <p>제3조 ~ 제36조 (현행과 같음)</p>